

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1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개정이유

- 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” 제17조 및 “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”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·도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,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,
-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직급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제3조 제1항중 “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” 를  
“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”로 개정함(안 제3조 제1항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” 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” 을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로 하고, “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” 을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” 를 “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” 로 한다.

제4조중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” 을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」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 (이하 “의사국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조직) ①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,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&lt;개정 96. 1.12&gt; ②~④(생략)</p> <p>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.....,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.....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제3조(조직) ①.....;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②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..... , 직급별 정원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」 으로 정한다.</p>

# 관 계 법 령 발 취 서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 [일부개정 2005.1.25 법률 7340호]

**제17조 (의사국의 설치등)**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,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.

□ **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[일부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18247호]

**제10조 (교육위원회 의사국)**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,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0.2.28>

**제13조 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**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"단위기관"이라 한다)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0.2.28>

1.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·도 교육청과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
2. 업무의 성질·난이도 및 책임도등을 참작할 것
3.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. 다만,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 직급으로 할 수 있다.

4.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지역교육청(소속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학교

**제19조 (정원의 규정)** ①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29>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
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